

2026년 제2회 홍성교도소서산지소 기간제근로자(방호원) 채용 공고

홍성교도소서산지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방호원)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6년 6월 30일

홍성교도소서산지소장

1. 선발예정 분야 및 인원

임용예정기관	채용분야	채용직종	선발예정인원	채용기간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기간제근로자	방호원	1명	휴직자 복귀시까지 (2026. 12. 21.예정)

* 방호원 휴직자(5월) 대체인력 채용

2. 담당예정 직무

- 교정기관 외부정문 경비 및 보안점검
- 교정기관 출입 민원인 안내 및 차량 통제
- 울타리 주변 등 외곽 순찰
- 기타 관련 규정 및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등

3. 근무 체계

- 주간 고정근무자 : 주 5일 근무(평일 8시간)
- 주·야간 교대근무자
 - 3교대 순환근무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무)
 - 주간 근무 : 8시간
 - 야간 근무 : 11시간
- 주간 및 교대근무자 1월 단위로 순환 ※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

4. 관련 법령

- 법률 제20520호(2024.10.22.) 「근로기준법」
- 법무부 훈령 제1601호(2025.12.30.)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5. 응시 자격

[적용기준일 : 최종 면접시험일]

가. 공통요건

- 「법무부 공무원 등 근로자 관리지침」,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임용시험에서 동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당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른 시험이나 그 밖에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 응시연령 : 18세 이상(2008. 12. 31. 이전 출생자)인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단,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교대근무(주간·야간)가 가능하고 근무지로 출퇴근이 가능한 자

나. 응시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 (자격요건1)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원 또는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이수한 사람

○ (자격요건2)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요건3)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요건4) 「군인사법」에 따른 부사관 이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요건5) 경비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자격요건6) 「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교정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위 자격요건 중 해당되는 사항을 택일하여 응시 요망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해당분야 경력을 의미하며, 경력증명서 제출건에 한함[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부서, 직위(직급),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6. 우대 사항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경비·보안 관련분야* 근무경력(1년 이상, 연차별 차등 배점)

■ 응시요건 충족 이후의 해당분야 근무경력을 연차별 차등 배점하여 우대함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에 따른 경비·보안 관련 업무 및 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직업군인(부사관 이상)·교정직공무원 경력 1년 이상인 자

○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경비지도사)

■ 「경비업법」에 따른 일반경비지도사 또는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무도 단종 2단 이상 보유자(단수별 차등배점)

< 무도단종 인정기준 >

■ 대한체육회 가맹 단체(11개)가 인정한 단종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가라테연맹, 대한택견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 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에서 인정한 단종

* 단체 : 경찰청 채용 무도관련 가산점 인정 단체 (붙임 1 참조)

※ 단종은 단일 종목의 단종에 한하며 복수 단종의 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7. 가산 사항

[적용기준일 : 원서접수 마감일]

○ 장애인 : 만점의 10%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9조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8. 급여 및 후생복지

- 보수 수준 : 2,155,880원 + 정액급식비 160,000원 (초과·휴일수당 등 별도)
※ 주·야간 교대근무자 기준이며, 근무시간에 따라 유동적임
- 상여금 및 맞춤형복지비 제공
- 근무복 등 피복류 제공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가입 등

9. 시험 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적합성,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및 우대조건 등을 서류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 서면 심사 후 합격자 결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하인 경우 업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 자격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하면 모두 합격(소극적 서류전형)
-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하고,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서류전형 기준

1. 자기소개서
2. 직무수행 계획서
3. 우대 요건 : ‘6. 우대사항’ 참고
4. 가산 사항 : ‘7. 가산사항’ 참고

☞ 우대 및 가산사항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인성, 전문성,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상’, ‘중’, ‘하’로 평정

※ 4개 항목의 평정요소 : ①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의 기본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 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2차 시험(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불합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중', '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임)
 -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의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항목 중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하는 경우, 동순위자를 대상으로 다시 면접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채용계약 체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포기, 선발취소, 사전예고 없는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10. 시험 일정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26. 6. 30.(화) ~ 7. 7.(화)	'26. 7. 3.(금) ~ 7. 7.(화)	'26. 7. 15.(수)	'26. 7. 21.(화)	'26. 7. 24.(금)

※ 임용일은 추후 통지함(6월 초 예정)

※ 채용공고는 법무부(www.moj.go.kr)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www.gojobs.go.kr) 누리집에 게시하고, 서류전형 합격자면접일정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 법무부 누리집에 게시**하니 응시자는 시험일정을 반드시 법무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법무부 또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제출(양식 임의변경 금지)

나. 접수기간 및 시간

- 2026. 7. 3.(금) ~ 7. 7.(화), 09:00 ~ 18:00

다. 접수처 (홍성교도소서산지소 총무계, ☎ 041-661-0723)

(우) 31930

충남 서산시 성연면 두치로 343

홍성교도소서산지소 총무계 채용담당자(응시원서 재증)

라. 접수방법

- 접수처에 직접 제출(대리인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방문접수의 경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가능하고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26.7.7.)소인분까지 유효하게 인정

※ 제출서류 미비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응시자에게 접수 결과 및 응시번호 문자 통지)

12. 제출서류 안내

가.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1.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서류 총괄표 (별지서식 제1호)	○ 응시자별 제출하는 서류 총괄표 작성
2. 응시원서 (별지서식 제2호)	○ 응시원서 작성
3.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4.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4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5. 직무수행계획서 1부 (별지서식 제5호)	○ A4 2매 이내로 작성

구 분	내 용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6호)	○ 공통 필수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7호)	○ 공통 필수
8.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8호)	○ 공통 필수
9.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 (별지서식 제9호)	○ 공통 필수
10.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 (별지서식 제10호)	○ 공통 필수
11.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별지서식 제11호)	○ 공통 필수
12. 일반(특수)경비원 신입교육 이수증 사본 1부	○ 응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필수
13. 경비·보안 관련 업무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 *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에 따른 경비·보안 관련 업무 및 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직업군인(부사관 이상)·교정직공무원 경력자	○ 응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필수 ○ 그 외 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연·월)·직위(급) 등을 정확히 기재, 미제출시 경력 불인정 ○ 발급 확인자 연락처 포함 ○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14. 4대 보험 자격 특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1부	○ 관련 경력(응시/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15. 소득금액 증명서(전 근무기간)	○ 관련 경력(응시/우대요건) 해당자에 한함
16. 경비지도사 자격증명서 사본 1부	○ 응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필수 ○ 그 외 해당자에 한함
17. 무도 단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18. 장애인 및 취업지원 등 사회형평 가점 증빙서류 1부	○ 해당자에 한함
19. 주민등록초본 사본 1부(남성만 제출)	○ 병역관련 사항 이 기재되도록 발급

※ 제출서류는 상기 번호 순서대로 정리한 후,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 (스테이플러 사용금지)**

나. 유의사항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채용 확정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별지서식 12>을 참고하여 홍성교도소서산지소에 방문 후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관련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홍성교도소서산지소에서 일정 기간 보관됩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26. 7. 27. ~ '26. 8. 26.

- 제출된 증빙서류는 발행기관에 진위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기 바라며, 응시원 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구분	유의사항
모든 증명서	▶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제출된 경력 사항에 대하여만 인정함
경력증명서	▶ 경력증명서는 근무한 기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근무부서·근무기간·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 되어 있어야 함 ※ 발급기관의 전화번호·Fax번호·E-mail 주소를 기재
외국어 작성 증명서	▶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는 공증 받은 한글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

13. 유의사항

- 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게 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시험일정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채용계약 체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포기, 선발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
-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의 합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임용 불가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 공고합니다.

- 누구든지 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채용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릅니다.
- 자격요건, 채용절차 및 담당직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교도소서산지소 총무계(☎041-661-07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11개)

대한태권도협회(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태권회	대한우슈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주짓수회
대한씨름협회	대한레슬링협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8개)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대한민국합기도중앙협회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중앙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해동검도협회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연맹
대한특공무술연맹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대한생활체육복싱협회	ITF태권도협회	특전사특공무술
대한합기도총협회	한국킥복싱협회	대한특전무술협회
대한종합격투기연맹	천무극협회	대한삼보연맹
경찰무도교육원	대한삼단봉협회	대한프로복싱협회
세계프로킥복싱무에타이총연맹	대한경찰경호무도연맹	대한이종격투기연맹
대한특공무술총연합회	대한크라브мага협회	대한킥복싱협회

○ 무예 분야 국가무형문화제 보유단체(1개)

택견보존회

<별지서식 제1호>

서류전형 증빙자료 제출서류 총괄표

성명	생년월일	응시기관	응시분야	응시자격요건
	. . .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기간제근로자 (방호원)	예) 자격요건 2

■ 작성목록(총괄표)

목 록	제출여부
① 제출서류 총괄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② 응시원서(필수)	☐ 제출 ☐ 미제출
③ 이력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④ 자기소개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⑦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⑧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⑨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⑩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⑪ 공정채용 확인서 1부(필수)	☐ 제출 ☐ 미제출
⑫ 일반(특수)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사본 1부(필수 또는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⑬ 경비·보안 관련 업무 경력(재직)증명서 사본 1부(필수 또는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⑭ 4대보험 자격 득실 이력 확인서 중 1종 1부(관련 경력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⑮ 소득금액 증명서(전 근무기간) 1부 (관련 경력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⑯ 경비지도사 자격증명서 사본 1부(필수 또는 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⑰ 무도 단증 사본 1부(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⑱ 장애인 및 취업지원 등 사회형평 가점 증빙서류 1부(해당자)	☐ 제출 ☐ 미제출
⑲ 주민등록초본 1부(남성만 병역사항 기재되도록 발급)	☐ 제출 ☐ 미제출

※ □에는 서류제출여부를 √하여 제출하시고, 증빙서류(사본)에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등 개인 신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조치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성명 :

(서명)

홍성교도소서산지소장 귀하

응시원서

본인은 홍성교도소서산지소에서 실시하는 기간제 근로자(방호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홍성교도소서산지소장 귀하

※응시번호	채용담당자 기재			성명			(한글)		
응시분야	기간제 근로자 (방호원)						(한자)		
주민등록번호					복수국적 해당여부		☐ 예 ☐ 아니오		
응시요건	☐ 자격요건1	☐ 자격요건2	☐ 자격요건3	☐ 자격요건4	☐ 자격요건5	☐ 자격요건6			
주 소	(우)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 (기간제 근로자)채용시험

※응시번호	채용담당자 기재	응시분야	방호원
성명	(한글)	(한자)	
2026년 월 일 홍성교도소서산지소 총무계장 ㉠			

주의사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 및 날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당일까지 홍성(교)서산지소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신분증 지참)
-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도착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반드시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3. 응시요건 : 공고문 5.의 응시자격을 참고하여 응시요건 중 선택하여 표시

※ 응시자격요건 미선택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요건 선택예시>

응시요건	☐ 자격요건1	☒ 자격요건2	☐ 자격요건3	☐ 자격요건4	☐ 자격요건5	☐ 자격요건6
------	--------------------------------	---	--------------------------------	--------------------------------	--------------------------------	--------------------------------

4.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5.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전자우편 · (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6.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이력서 작성요령

가. 공통사항

- ①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 ② 응시기관 : 홍성교도소서산지소
- ③ 응시요건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공고문상 경력기준 중 해당되는 사항을 1개만 선택하여 기재 (ex. 자격요건 2번)
※ 응시자격요건 미 기입 등으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 ④ 현주소, 연락처, 병역사항, 생년월일을 정확히 기재

나. 응시자격

- ① 자격(이수)증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일반(특수)경비 신임교육 또는 경비지도사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
 - * 본인이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니 증빙 가능한 사실만 기재
 -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근무기관,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 ※ 응시자격 요건 상 현재 근무중인 경력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경력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직위(급)는 재직기간 중에 있었던 모든 직위(급)를 나누어 기재
 - 근무년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연, 월단위로 표시 예) 1년 6월

다. 우대요건 :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

- ① 관련경력 : 경비·보안 관련 업무 경력 기재
 - 경비업법·청원경찰법 등에 따른 경비·보안 관련 업무 및 경찰공무원·경호공무원·직업군인(부사관이상)·교정직공무원 경력 1년 이상인 자
 - 관련된 경력을 모두 기재(최근 경력 및 실적부터 기재)
- ※ 우대요건 상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근무기간 종료일로 하되, 서류 제출 이후 퇴사·이직 등으로 우대요건 미충족시 최종합격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② 자격증 : 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자격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여야하며,
자격증 명·취득일·검정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무도단증

- 단증 취득예정자의 경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단증을 취득하여야하며, 단증
종목·단수·취득일·발행기관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④ 취업대상자 및 저소득층

- 구분 : 해당되는 사항 기재
- 세부내용 : 가산비율을 알 수 있는 내용 기재
- 발행기관 : 국가보훈처, 해당 지자체 등 증빙할 수 있는 기관 기재

※ 기재사항은 증빙 상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글자크기, 장평 등을 조절하여 2장 이내로 작성가능

자 기 소 개 서

성명						응시기관	홍성교도소서산지소
생년월일 (생년제외)						응시분야	방호원
*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해 주십시오.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작 성 자 : (서명)							

【작성요령】

- ① 자기소개서 양식 변경 불가
- ② A4용지 2매이내의 분량으로 작성(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4포인트, 줄간격 160%)

직무수행계획서

성명							응시기관	홍성교도소서산지소
생년월일 (생년제외)	X	X					응시분야	방호원
* 자신의 지식.경험.경력 등과 응시직무와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① 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 ② 직무수행 방향 및 비전 ③ 구체적 실천방안 순으로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 . 작 성 자 : (서명)								

【작성요령】

- ① 직무수행계획서 양식 변경 불가
- ② A4용지 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글자체는 휴먼명조, 글씨크기 14포인트, 줄간격 160%)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응시기관	홍성 교도소서산지소
생년월일		응시분야	기간제근로자(방호원)

본인은 홍성교도소서산지소에서 시행하는 기간제 근로자(방호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홍성교도소서산지소가 실시하는 자격, 경력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6년 월 일

성명 : (서명)

홍성교도소서산지소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법무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방호원) 채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성명, 주소, 연락처, 자격·경력·학위 등</u>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리	<u>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주민등록번호</u>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리	<u>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u>범죄경력자료</u>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리	<u>5년</u>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진행 할 수 없어 공직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리 (자격확인)	자격, 경력, 단증, 취업지원대상자 등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	--

미동의	
-----	--

☐ 복수국적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조회)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 후 파기)

☐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을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시험 실시기관이
조치 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 항목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인사혁신처	시험 응시자격 정지여부 회신	성명, 주민등록번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유	
----	--

미동의	
-----	--

※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양 일

성명

(서명)

홍성교도소서산지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경찰청, 경찰서, 홍성교도소서산지소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기간제 근로자 채용 결격사유 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 번	행정정보명		
1	범죄경력 유무 조회		
2	결격사유 유무 조회		
3	공무원 시험 부정행위 유무 조회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_____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
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결격사유 검증을 위한 체크리스트

성 명	생년월일

목 록	해당여부
① 피성년후견인	☐ 해당 ☐ 해당없음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④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해당 ☐ 해당없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⑧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⑨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해당 ☐ 해당없음
⑩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⑪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해당 ☐ 해당없음

응시자 본인은 위 사실이 다름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성명 : (서명)

홍성교도소서산지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10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u>공직자</u>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해당 ☐ 비해당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여비 부당수령: 해당	해당 ☐ 비해당 ☐
3-1. 해당 부패행위로 <u>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u>된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3-2. 위 퇴직일(당연퇴직·파면·해임일)로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u>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해당 ☐ 비해당 ☐
4-1. 해당 부패행위로 <u>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u>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해당 ☐ 비해당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u>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5년 내)</u>	해당 ☐ 비해당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해당 ☐ 비해당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해당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해당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20 년 월 일

생년월일

지 원 자

(서명)

년 월 일

공정채용 확인서

(응시자용)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무부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무부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 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촌 이내 / 소속기관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서명 (인)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고지

- ① 수집·이용목적 : 채용경로 조사 및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 이행을 위한 채용비리 여부 조사, 감사자료 작성
- ② 수집·이용항목 : 성명, 소속, 직종, 소속기관 입사일자, 법무부 직원과의 관계 및 해당 직원 소속, 성명
- ③ 보유기간 : 재직기간 동안 보유

홍성교도소서산지소장 귀하

<별지서식 제12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홍성교도소서산지소장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